

제2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2. 3. 23.)에서
의결된 무안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
이에 공포한다.

2022. 3. 24.

무안군의회 의장



대 현

무안군의회 규칙 제2022-8호

덧붙임 : 무안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.

무안군의회 규칙 제2022-8호

무안군의회 국외 공무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

무안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무안군의회의원”을 “무안군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원”을 “소속 의원 및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전단 중 “의정팀장”을 “의회행정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<u>무안군의회의원</u>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⑤ 심사위원회는 <u>의원</u>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⑥·⑦ (생략)</p> <p>제6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의회사무과 <u>의정팀장</u>이 된다.(개정 2022.1.13.의회규칙2021-11)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무안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--- ----- ----- ----- <u>무안군의회</u>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소속 의원 및 공무원</u>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·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회행정팀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